

긴급입찰공고 사유서

1. 용역요지

- 가. 용역명 : 미얀마 달라(Dala) 신도시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
- 나.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60일간
- 다. 사업예산 : 550백만원

2. 긴급입찰공고 사유

가. 사업의 성격

- 본 용역은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4 및 국토부훈령 제1151호 제8조제4항에 의거, 우리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임
- 본 용역의 대상사업은 한-미얀마 간 체계적 협력 속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, 민관협력사업(PPP)(제안형 개발사업)의 형태로 진행 예정
- 대상지역은 양곤주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이 기 완료되었으며('17, KOICA), '한-미얀마 우정의 다리' 건설사업('22년 준공, EDCF사업)이 시행 중으로, 기 추진한 국가사업과 연계 시 동 지역의 개발 효과 극대화 가능
- 따라서 한국의 후속사업 참여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, 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조사, 토지 및 도시개발 제도 분석, 기술, 재무, 법률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

나. 긴급입찰 사유

- 본 사업은 현지정부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참여를 검토하는 사업으로, 한국의 사업권 조속 확보여 타 국가지원사업과의 연계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내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성 검증을 통하여 현지정부 협의를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이 필요한바, 긴급입찰공고를 통한 적기 자료 활용이 필요
 - * 신도시 개발 사업제안서 제출(12월)
- 정상적으로 "협상에 의한 계약"을 추진할 경우(공고기간 40일) 최종 협의자료 작성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